

외국인 유학생 선발 시행세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외국인 유학생(D-2, D-4)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발) ① 본교 학칙 제54조 내지 제55조에 의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5조의 전형에 의해 입학정원외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.

②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은 학칙 제56조의3에 의해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입학이 가능한 자로 한다.

③ 어학연수생의 선발은 정규학과 계열학기로 구분하되, 정규학기의 개설은 본과과정의 학사일정에 준한다. 다만, 한국어 어학연수과정의 방학기간 개설을 위한 한국어 어학연수생을 별도로 선발할 수 있다.

제3조(입학자격)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과정 어학연수생과 본과,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자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
2. 학부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(통상 12년)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자, 또는 수료예정자로서 그 나라에서 대학입학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.
3. 학부과정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의 해당 학년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 이어야 한다.
4.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(4년제)을 졸업한 자 또는 수료예정자로서 그 나라에서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.
5.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어학연수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(통상 12년)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자, 또는 수료예정자로서 그 나라에서 대학입학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. 다만, 초·중등 한국어 단기과정에 입학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.

제4조(제출서류) 외국인 유학생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양식은 붙임의 양식에 의한다.(개정 2008.5.1)

1. 입학지원서
2. 자기소개서
3. 학업계획서 및 학비조달계획서
4. 재정보증서
5. 최종학력증명서 및 학력증명서 각 1부
6. 성적증명서
7. 보호자 재직증명서와 소득세 납부증명서 각 1부.
8. 호구부(가족전체) 및 거민신분증(사본) 각 1부.
9. 미화 \$10,000이상 은행잔고증명서(학부 및 대학원 입학자에 한함)
10. 증명사진 5장
11. 공인기관 인정 한국어능력시험(3급이상)자격증.(어학연수과정 제외)

제5조(전형방법) ①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한다.

② 어학연수생이 본과과정 진학 시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(3급이상)에 합격한 자와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.

제6조(선발절차)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.

1. 유학생(어학연수생)서류 접수
2. 서류심사
3. 면접심사(현지)

4. 표준입학허가서 발급
5. 사증신청
6. 사증발급자 통보
7. 등록금 입금(사증인정번호 통보)
8. 현지에서 비자(어학연수 D-4, 유학생 D-2)신청
9. 한국입국 및 입학
10. 외국인 등록

제7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2007. 12. 1)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5. 1)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